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29
----------	-----

제안일자 : 2022년 9월 21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박환희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67호)과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76호)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,

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 예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이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유상 기증과 무상기증의 절차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나.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구체화(안 제4조제3항).
- 다.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라. 수증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의3 신설).
- 마. 수증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.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자료 기증)”을“(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준용한다”를 “준용하되, 예비평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”를 “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, 시장이나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제4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개별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관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수증심의위원회)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.

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

2.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

3.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실무위원회·평가위원회·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

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”를 “실무위원회, 평가위원회, 수증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료 기증) ① (생략)</p> <p>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. 단, 무상기증은 <u>자료 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</u></p> <p><신설></p> <p>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<u>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준용하되, 예비평가는 수증심의 위원회가 한다. ----- 수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---.</u></p> <p>③ <u>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, 시장이나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(생략)</p>	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“이라 한다)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(이하 “부서장“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
----- 관
장 -----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수증심의위원회)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.

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
2.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
3.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

<신 설>

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
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
니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
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

피) ① 실무위원회·평가위원회
·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
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
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
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
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
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
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
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
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

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
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
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
수 있고,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
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
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
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
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 지급) 실무위원회
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
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
범위 안에서 수당, 출장비 및 심
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
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
제9조(수당 등 지급) 실무위원회,
평가위원회, 수증심의위원회--

다.

--.